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8663 |
|----------|------|

발의연월일: 2017. 8. 24.

발의자: 이개호 · 김정우 · 주승용  
이춘석 · 김철민 · 최인호  
홍문표 · 김성찬 · 전재수  
김한정 · 김해영 · 홍익표  
박재호 · 서형수 · 김현권  
권석창 · 윤후덕 의원  
(17인)

### 제안이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입물량의 99% 이상을 운송하는 해운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기간산업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측면에서도 유사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우리 해운산업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해운산업 장기불황은 많은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합종연횡을 촉발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과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해운산업은 시장에서의 위상과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황임. 중국 등 경쟁국들이 규모와 체계를 갖춘 해운특화 금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해운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조속히 재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운산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임.

그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각 프로그램이 여러 정책금융기관들로 분산·운영되다 보니 전문성과 지속성, 유연성을 갖춘 해운안전망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금융부분과 해운산업 정책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불황기에 오히려 금융지원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음.

이에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자 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해운 재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해운산업 재도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및 자본금(안 제1조·제3조 및 제5조)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 출자하는 자본금 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함.

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사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안 제11조)

- 1)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보증을 지원하고, 안정적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중고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등을 지원함.
- 2)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의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사의 사채 원리금 등에 대해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감독·설립 준비(안 제19조 및 부칙 제2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감독하도록 하되, 금융위원회도 경영건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2)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함.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선박을 말한다.
2. “해운항만업”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해운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을 말한다.
3. “해운항만사업자”란 해운항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제6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장 업무 및 회계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용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사업자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4.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5.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 무

6.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7.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1.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보증사업

12.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환 보증)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1호 및 제

12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융자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삭제하여야 한다.

### 제3장 보칙

제1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자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설립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

를 받아야한다.

⑤ 설립위원회를 초대 이사회 선임 시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4조(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설립한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상법」 제172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의 재산과 권리 · 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재산과 권리 · 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각 회사 및 기관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한다.